

## 자활기업 활성화를 위한 금융·비금융지원 업무협약

중앙자활센터(이하 '중앙자활'이라 한다),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자활기업 활성화를 위한 금융·비금융지원 업무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기로 한다.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자활기업의 성장지원을 통해 사회적 가치 실현과 빈곤·양극화 극복을 위한 기관 간 협력 및 정책적 지원 합의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원칙) 중앙자활, 신보(이하 통칭하여 '협약당사자'라 한다)간 자활기업 지원을 위해 체결한 기존의 다른 협약과 본 협약이 상충하는 경우에는 본 협약을 우선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 "특별출연금"이라 함은 본 협약 제4조부터 제5조에 따라 중앙자활이 신보에 특별히 출연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 "보증료 지원금"이란 신보의 보증기업에 부과되는 보증료 중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앙자활이 신보에 미리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③ "경영컨설팅 지원금"이란 컨설팅 수진기업에 부과되는 컨설팅 수수료 중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앙자활이 신보에 미리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④ "협약보증"이란 본 협약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춘 자활기업의 신규대출에 대한 신보의 신규보증을 말한다.

⑤ "자활기업"이란 '지원대상자활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은 기업을 말한다.

⑥ "협약보증 출연금 총량한도"란 협약보증 출연금의 누계액의 8배에 해당하는 신규보증 공급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⑦ "경영컨설팅"이란 본 협약에 따라 자활기업에 지원하는 경영전략, 인사·조직, 마케팅, 재무·회계, 생산관리, 정보화(IT) 분야 등에 대한 컨설팅을 말한다.

⑧ "M/D"란 Man-Day의 약자로 컨설팅을 수행하는 컨설턴트 1인이 1일 8시간 기준으로 실시하는 컨설팅 수행 단위를 말한다.

### 제2장 특별출연금 및 지원금

제4조(출연금 및 지원금) ① 중앙자활은 협약보증 특별출연금 4,450백만원, 보증료 지원금 375백만원, 경영컨설팅 지원금 175백만원, 총 5,000백만원을 신보에 납부한다.

② 중앙자활은 제1항에 따른 특별출연금, 보증료 지원금 및 경영컨설팅 지원금을 아래 계좌에 입금 후 그 사실을 신보에 통지하고, 신보는 납부 영수증을 중앙자활에 송부한다.

계좌번호	신한은행 100-018-527393
예금주	신용보증기금

제5조(출연금 및 지원금 분할 납부) ① 제4조의 특별출연금, 보증료 지원금 및 경영컨설팅 지원금은 신보와 중앙자활이 합의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② 특별출연금, 보증료 지원금 및 경영컨설팅 지원금을 분할 납부하는 경우, 중앙자활은 5회에 걸쳐 10억원씩 분할납부하고, 신보는 매회차 협약보증 신규공급 누계액이 이미 납부한 특별출연금의 5배에 달하는 시점에 중앙자활에게 잔여 특별출연금, 보증료 지원금 및 경영컨설팅 지원금의 납부를 요청한다. 이 경우 중앙자활은 요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잔여 특별출연금, 보증료 지원금 및 경영컨설팅 지원금을 제4조제2항에서 지정한 계좌에 입금한다.

### 제3장 특별출연 협약보증 대상 및 지원 방법

제6조(지원대상 기업) '지원대상자활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활기업과 그 밖에 협약 당사자가 상호 협의하여 지원하기로 정하는 기업으로 한다.

제7조(지원대상 자금) 특별출연 협약보증은 은행이 취급하는 운전자금과 시설자금 대출에 대한 개별보증에 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은 보증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Fast-Track) 프로그램」에 의한 대출
2. 협약 당사자가 지원대상 자금에서 제외하기로 별도로 통보한 대출

제8조(지원한도) 신보는 특별출연 협약보증의 신규 공급 누계액이 특별출연 협약보증 총량 한도에 달할 때까지 특별출연 협약보증을 지원한다. 다만, 시설자금의 경우 시설후취에 상관없이 신규보증 당시 금액 기준으로 총량에 산정한다.

제9조(협약보증 상품구조) 특별출연 협약보증은 신보 내규의 분할상환 구조를 결합한 5년 이상 장기보증으로 취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협약운용) ① 협약당사자는 제6조의 기업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적극 협력한다.

1. 중앙자활은 지원대상 기업 추천 및 협약당사자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을 지원하며 다음과 같이 보증료를 지원한다.

가. 보증료는 신보 내규에 따라 산출된 최종 보증료율에서 중앙자활이 0.2%를 보증료 지원금으로 지원하고 나머지는 기업이 부담

나. 보증료 지원 협약보증에 대한 보증료 지원 기간은 5년

다. 제가목부터 제나목까지에 따라 지원된 보증료는 보증료 지원금에서 차감

라. 보증료를 환급할 때에는 당초 보증료 납부 시 기업, 중앙자활, 그 외 은행 등이 부담한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환급. 이 경우 중앙자활의 보증료 환급분은 보증료 지원금으로 환입

2. 신보는 다음의 우대 사항을 적용한다.

가. 신보는 「자활기업 초록보증 프로그램 업무처리방법」,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보증 운용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료율 우대 적용

나. 보증비율 100% 우대 적용. 다만, 협약보증에 대한 신보의 보증채무이행으로 특별출연금이 모두 소진 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보증 운용기준」으로 운용되는 자활기업은 보증비율 우대 미적용

3. 그 외 자활기업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지원대상 기업에 대한 협약보증, 협약대출의 지원 여부 및 지원 규모 등은 신보 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장 경영컨설팅 지원 등 비금융지원

제11조(지원대상 기업) 경영컨설팅 대상 기업은 제6조의 특별출연 협약보증 대상기업과 그 밖에 협약 당사자가 상호 협의하여 지원하기로 정하는 기업으로 한다.

제12조(지원한도) 경영컨설팅 기업당 지원한도는 신보의 내규에 의한 지원한도 범위 내에서 협약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제13조(경영컨설팅 운용) ① 제11조의 지원대상 기업의 컨설팅수수료는 신보와 중앙자활이 8:2의 비율로 분담한다.

② 경영컨설팅은 6M/D를 원칙으로 하며 자활기업이 요청하거나 협약 당사자가 필요하다고 상호 협의하여 인정하는 경우 신보 내규에 따른 같은 기업 당 최대 한도 이내로 추가 경영컨설팅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신보는 자활기업의 경영컨설팅 요청내용 및 경영컨설팅 수행 결과를 중앙자활과 공유한다.

### 제5장 그 밖의 사항

제14조(협약 발효) 본 협약의 효력은 제4조와 제5조에 따른 특별출연금을 납부하는 날로부터 발생한다.

제15조(협약 유효기한) ① 본 협약에 의한 협약보증은 협약보증 총량한도가 모두 소진될 때까지 운용한다.

② 본 협약에 의한 보증료 지원은 보증료 지원금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 운용한다.

③ 본 협약에 의한 경영컨설팅은 경영컨설팅 지원금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 운용한다.

제16조(비밀유지) 협약당사자는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대방의 서면동의 없이 본 협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 등을 본 협약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17조(홍보) 협약당사자는 협력 내용과 관련하여 신문광고, 보도자료 제공, 홈페이지 활용 등 홍보활동에 상대방의 명의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 협의한다.

제18조(협약 변경) 본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약당사자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한다.

제19조(협약 해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협약당사자가 상호 합의한 경우
  2. 제15조에서 정한 협약 유효기한이 경과한 경우
  3. 협약당사자가 본 협약에서 정한 내용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경우
- ② 본 협약을 해지할 경우 협약 당사자는 제4조부터 제5조까지에 따라 이미 납부한 출연금의 반환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제20조(합의관할) 본 협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협약당사자가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되, 상호 협의에 의해 해당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소송에 의하고, 이 경우 관할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다.

제21조(협약의 증명) 본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 당사자는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기명날인한 후 1부씩 보관한다.

제22조(보칙) 본 협약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협약 당사자의 관계 법령 및 제규정 등에 따르고 그 관계 법령 및 제규정 등에서도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2019. 1. 25.



(재)중앙자활센터

Central Self-Sufficiency Foundation

중앙자활센터

이사장 유 만 희

KDIT 신용보증기금

KOREA CREDIT GUARANTEE FUND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윤 대 희

이병학

윤대희